

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
제308회 제2차 정례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【의원발의】

검 토 보 고 서



2024. 12.

운영위원회 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4. 12. 17.
운영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고명옥 의원 외 13명(임미연, 정순옥, 최홍린, 박왕규, 권숙자, 남현주, 이영빈, 박정환, 정창근, 이진환, 김장관, 박종길, 도하석)
- 발의일자: 2024. 12. 6.
- 회부일자: 2024. 12. 6.
- 검토기간: 2024. 12. 9. ~ 12. 11.

2. 제안이유

-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집행부에 대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정례회의 집회일 변경(안 제4조)
 - 제2차 정례회: 11월 16일 → 11월 27일
-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, 제53조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1조
- 비용추계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4. 12. 6. ~ 12. 16.) 결과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1조에 따라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- 주요 내용으로
 - 안 제4조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함에 따라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‘11월 16일’에서 ‘11월 27일’로 변경하였음.
 - 안 제5조는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음.
- 행정사무감사는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라 매년 일정기간을 정해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,
-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할 경우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다음 연도 사업 반영, 필요한 예산 편성 요구 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바, 이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<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>

【관계 법령】

□ 지방자치법

제49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~ ⑦ 생략

제53조(정례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
② 정례회의 집회일,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41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)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.

② ~ ⑤ 생략